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(별지 제9호서식)

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 청 석 학 원 이 사 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청 주 대학교의 2019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 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 (~~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~~)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라 청 주 대학교의 2019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19. 4. .

학 교 법 인 청 석 학 원

감 사 박 ○○ ㊞

감 사 남기장 ㊞

피감사자(입회인)

직 명 사무처장

성 명 안 호 석 ㊞

※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